

2022. 2. 14.(월) 10:00

제29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월 24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등 4인

3. 제안사유

- 달성군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평가 등 (안 제4조~제5조)
- 노동자의 권리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지원 (안 제6조 ~ 제7조)
-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안 제8조 ~ 제10조)
-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센터 설치 (안 제11조)

5.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

○ 제정이유

- 대내외 상황으로 주력산업이 흔들려 노동 환경이 악화되거나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으로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 제4조와 제5조에 군수는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토록 정함.
- 제6조, 제7조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예산지원,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제11조에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노동 기본 조례」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은 지역 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군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군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환경개선 지원
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권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군수는 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① 군수는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사무를 처리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능력 있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그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월 24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타법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안 제1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이 개정(2022. 1. 13.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u>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u>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삭 제</u>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월 24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타법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제53조” 로 변경(안 제1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인용 조항이 개정(2022. 1. 13.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를 “제53조” 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 ----- -----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13.]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월 24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변경된 인용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제59조(안 제1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를 “제59조” 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u>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로 하고, “효율적인”을 “청원에 대한 효율적인에 제출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13.]**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1월 24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기록표결 도입과 관련하여 표결방법의 다양화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록 표결 방법의 다양화(안 제41조)
 - 표결 시 “기명투표” →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른 표결 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41조제1항 중 “기명투표” 를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 로 표결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상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기명투표”를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u>기명투표</u> 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u>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u> ----- ----- ----- -----.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2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방안 연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하고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598
 - 주요시설 : 사무실, 기념품 전시판매장, 체험실, 전시실, 카페 등
 - 소요인력 : 3명(센터장 1, 직원 2)

- 위탁기간 : 2022.4 ~ 2024. 3월(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 150백만원 정도(9개월분(22. 4 ~ 22. 12월))
- 추진일정
 - 2022. 2 : 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2~3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3 : 협약체결 및 시설물 인계·인수

II. 검토의견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송해공원 일대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역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송해관련 콘텐츠 개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독창적 체험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주민참여 방안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기관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2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우리군 관내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추진현황 보고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당초 달성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일 : 2015. 4. 30.(행정안전부)

4.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5.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용 역 명 :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 규 모 : 달성군 전역(A=426.7km²)
- 용 역 비 : 1,451,600천원(군비 100%)
- 용역기간 : 2020. 3. 19. ~ 2022. 3. 8.
- 용역내용

- 자연재해 현황조사 등 기초현황 조사
-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나. 추진현황

- 2020. 03. : 용역 착수
- 2020. 04.~06. : 기초현황 조사
- 2020. 07.~08. : 주민 설문조사 실시
- 2020. 10.~12. : 현장조사 실시(시설물 및 지역 주민의견 청취)
- 2021. 01. :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안) 작성
- 2021. 03.~12. :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안) 및 저감대책 수립
- 2021. 07. : 중간보고회 실시
- 2021. 08. : 실·과 및 읍·면사무소 의견조회 및 협의
- 2021. 12. : 공청회 개최

다. 향후계획

- 2022. 03. :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행정안전부 승인

라. 기대효과

- 재해위험지구의 관리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
- 효과적인 방재 예산 투자

마. 읍면별 위험지구 선정(안)

구 분	총계	화원	논공	다사	유가	옥포	현풍	가창	하빈	구지
총계	50	8	14	6	4	5	2	3	5	3
하천재해	12	2	3		3	2			1	1
내수재해	17	4	2	4			2		3	2
사면재해	12	1	8	1		2				
토사재해	4	1						3		
바람재해	0									
가뭄재해	1				1					
대설재해	3		1	1					1	
기타재해	1					1				

바.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현황

◎ 하천재해 위험지구(12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천내	화원읍 본리리 693	- 정비계획이 일부구간만 실시 - 통수능 불량으로 인한 하천 월류로 농경지 및 건물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696 m - 보축 L=491 m - 교량 재설치 1개소 (잠수교 철거 1개소) - 보 및 낙차공 재설치 2개소 (낙차공 철거 1개소)	5,892	
2	본리	옥포읍 본리리 168	- 하천기본계획에서 옥공2수문을 철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 - 현재 수문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대규모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300 m - 배수문 철거 1개소 - 교량 신설 1개소	1,831	
3	금포	논공읍 노이리 1377-8	- 하천기본계획 상 수립된 정비계획 미실시 - 하천 통수능이 부족하여 월류로 인한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1,284 m - 교량 재설치 3개소 - 보 및 낙차공 재설치 2개소	8,258	
4	성산천	화원읍 성산리 744-14	-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정비계획 미실시 - 하천 통수능이 부족하여 월류로 인한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강변저류지 신설 1개소 V=32,000m³	20,347	
5	대방천	옥포읍 본리리 2199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시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 495 m - 복개시설 1개소	2,607	
6	장리천	구지면 장리 688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시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 1,515 m - 교량 재가설 6개소 - 복개시설물 L= 155 m	6,039	
7	원산천	유가읍 한정리 129-1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시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 1,168 m - 교량 재가설 7개소	5,095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8	가 태 천	유가읍 가태리 810-1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기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농경지 및 건물 침수 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 264 m - 보축 L= 64 m - 교량 재가설 1개소	1,646	
9	현 내 천	하빈면 현내리 610-2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기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주거지 및 건물 침수 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 595m - 복개확장 L=885m	7,675	
10	전 들 천	논공읍 하리 795-1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제방이 노후화되고 침식 및 포락되어 기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	- 축제 L= 1,990 m - 교량 재가설 1개소	7,796	
11	용 호 천	논공읍 남리 1021-1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기설제방고 능력 부족으로 하천 월류에 의한 저지대 산업체 및 건물 침수 피해 발생 우려	축제 L= 1,689 m	6,915	
12	조 곡 천	유가읍 쌍계리 200	- 기존 종합계획, 설문 및 하천기본계획 미시행 - 소하천 복개구간의 하천통수능 부족으로 하천 인근 주거지 침수피해 우려	복개확장 L=110m	728	

◎ 내수재해 위험지구(17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매 곡	다사읍 매곡리 748	- 상세 위험도지수 9.0으로 고위험 후보지 - 건축물(주택, 상가) 및 공공시설(도로)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매곡배수펌프장 증설 (Q=156m³/min →2,040m³/min) - 우수관거 정비(L=1,190m)	22,483	
2	성 산 1	화원읍 성산리 88-1	- 상세 위험도지수 5.6으로 고위험 후보지 - 공공시설(도로)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성산1배수펌프장 증설 (Q=42m³/min →270m³/min) - 우수관거 정비(L=1,085m)	7,575	
3	성 산 2	화원읍 성산리 157	- 상세 위험도지수 5.6으로 고위험 후보지 - 공공시설(도로)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성산2배수펌프장 증설 (Q=42m³/min →156m³/min) - 우수관거 정비(L=524.5m)	6,317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4	화 옥 2	화원읍 설화리 790-1	- 상세 위험도지수 7.8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배수펌프장 신설 ($Q=1,320\text{m}^3/\text{min}$) - 유수지 신설 ($V=7,000\text{m}^3$) - 우수관거 정비 ($L=1,009\text{m}$)	36,521	
5	서 재	다사읍 서재리 64-3	- 상세 위험도지수 4.8로 중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서재배수펌프장 증설 ($Q=349.8\text{m}^3/\text{min}$ $\rightarrow 462\text{m}^3/\text{min}$) - 우수관거 정비($L=330\text{m}$)	6,272	
6	세 천	다사읍 세천리 1550-16	- 상세 위험도지수 5.6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산업단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우수관거 정비($L=4,526\text{m}$)	17,840	
7	매 곡 2	다사읍 매곡리 1544	- 상세 위험도지수 8.4으로 고위험 후보지 - 주거지 침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우수관거 정비($L=3,051\text{m}$)	14,972	
8	북 리	논공읍 북리 824-115	- 상세 위험도지수 6.8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산업단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북리배수펌프장 신설 ($Q=240\text{m}^3/\text{min}$) - 우수관거 정비($L=2,724\text{m}$)	12,930	
9	묘 리	하빈면 묘리 1003-5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 및 공공시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묘리배수펌프장 증설 ($Q=180\text{m}^3/\text{min}$ $\rightarrow 540\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9,138\text{m}^3 \rightarrow 32,560\text{m}^3$)	8,102	
10	감 문	하빈면 감문리 363-2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 및 공공시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감문배수펌프장 증설 ($Q=390\text{m}^3/\text{min}$ $\rightarrow 1,110\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15,474\text{m}^3 \rightarrow 66,334\text{m}^3$)	12,532	
11	구 라	화원읍 구라리 1305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 및 공공시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구라배수펌프장 신설 ($Q=900\text{m}^3/\text{min}$)	9,392	
12	성 하	현풍읍 성하리 632-6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성하배수펌프장 증설 ($Q=12\text{m}^3/\text{min} \rightarrow 252\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1,910\text{m}^3 \rightarrow 12,175\text{m}^3$)	6,527	
13	자 모	현풍읍 자모리 798-4	- 상세 위험도지수 12.0으로 초고위험 후보지 - 건축물(공공건축물) 및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자모배수펌프장 증설 ($Q=180\text{m}^3/\text{min}$ $\rightarrow 1,080\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37,452\text{m}^3 \rightarrow 103,954\text{m}^3$)	15,078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4	오설	구지면 오설리 721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오설배수펌프장 증설 ($Q=30\text{m}^3/\text{min}$ →$1,170\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1,385\text{m}^3$→$61,249\text{m}^3$)	16,518	
15	대암 (달성)	구지면 대암리 572-3	- 상세 위험도지수 4.8로 중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대암(달성)배수펌프장 증설 ($Q=18\text{m}^3/\text{min}$→$204\text{m}^3/\text{min}$)	5,541	
16	하리	논공읍 하리 755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하리배수펌프장 증설 ($Q=282\text{m}^3/\text{min}$ →$1,902\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24,376\text{m}^3$→$140,022\text{m}^3$)	23,170	
17	동곡	하빈면 동곡리 366-2	- 상세 위험도지수 7.2로 고위험 후보지 - 사유시설(농경지)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구	- 동곡배수펌프장 증설 ($Q=408\text{m}^3/\text{min}$ →$744\text{m}^3/\text{min}$) - 유수지 증설 ($V=8,380\text{m}^3$→$29,649\text{m}^3$)	7,822	

◎ 사면재해 위험지구(12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기세	옥포읍 기세리 산16-1	- 상세 위험도지수 9.6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3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4,100\text{m}^3$) - 낙석방지망 설치($A=6,000\text{m}^2$) - 락볼트 설치($L=5\text{m}$ -120공) - 낙석방지책 설치($H=3.0\text{m}$, $L=150\text{m}$)	1,572	
2	화원	화원읍 본리리 1292-1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1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375\text{m}^3$) - 낙석방지망 설치($A=350\text{m}^2$) - 낙석방지책 설치($H=3.0\text{m}$, $L=70\text{m}$)	207	
3	논공	논공읍 본리리 산112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C등급(평가표 점수: 61점)으로 붕괴위험성 있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2,400\text{m}^3$) - Soil nailing($L=8\text{m}$ -286공) - 식생보호공 설치($A=1,260\text{m}^2$)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00\text{m}$) - 낙석방지책 ($H=3.0\text{m}$ $L=193\text{m}$)	1,054	
4	논공	논공읍 본리리 산112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C등급(평가표 점수: 58점)으로 붕괴위험성 있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600\text{m}^3$) - Soil nailing($L=8\text{m}$ -364공) - 식생보호공 설치($A=1,600\text{m}^2$)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00\text{m}$)	1,059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5	논본리6	논공읍 본리리 산41-2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C등급(평가표 점수: 61점)으로 붕괴위험성 있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200m^3$) - RC옹벽($H=3.0m$ $L=120m$) - Soil nailing($L=8m$ -273공) - 식생보호공 설치($A=1,200m^2$)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20m$) - 낙석방지책 ($H=3.0m$ $L=120m$)	1,094	
6	논본리7	논공읍 본리리 29-124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C등급(평가표 점수: 58점)으로 붕괴위험성 있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600m^3$) - RC옹벽($H=3.0m$ $L=370m$) - Soil nailing($L=8m$ -327공) - 식생보호공 설치($A=1,440m^2$)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10m$) - 낙석방지책 ($H=3.0m$ $L=160m$)	1,714	
7	논본리9	논공읍 본리리 산151-1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5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200m^3$) -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정비($L=90m$) - 계단식옹벽($H=3.0m$, $L=75m$) - 영구앵커($L=12m$, -60공) - RC옹벽 설치($H=5.0m$, $L=75m$) - 낙석방지책 설치($H=3.0m$, $L=72m$)	1,046	
8	논본리10	논공읍 본리리 산164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5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600m^3$) -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정비($L=90m$) - 계비온쌍기($H=2.0m$, $L=70m$) - 식생보호공 설치($A=300m^2$)	155	
9	논북1	논공읍 북리 779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7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200m^3$) - 낙석방지망 설치($A=1,200m^2$) - 록볼트 설치($L=5m$ - 24공)	1,029	
10	논북2	논공읍 북리 산95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4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200m^3$) - RC옹벽($H=3.0m$ $L=120m$) - Soil nailing($L=8m$ -273공) - 식생보호공 설치($A=1,800m^2$) - 산마루측구 배수로 정비($L=120m$) - 낙석방지책 ($H=3.0m$ $L=120m$)	1,046	
11	다이사천	다사읍 이천리 726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C등급(평가표 점수: 58점)으로 붕괴위험성 있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1,100m^3$) - 낙석방지책($H=3.0m$, $L=50m$) - RC옹벽 설치($H=4.0m$, $L=50m$) - 가시설 낙석방지책($H=4.0m$, $L=50m$)	369	
12	송사면1	옥포읍 송촌리 산5-1	- 상세 위험도지수 6.0으로 고위험 후보지 - 위험도 D등급(평가표 점수: 61점)으로 붕괴위험성 높음	- 불안정한 토석 제거($V=280m^3$) -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정비($L=60m$) - 계비온쌍기($H=3.0m$, $L=40m$)	112	

◎ 토사재해 위험지구(4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본리	화원읍 본리리 1100	- 상류측 유역면적이 커서 고유량의 홍수 및 토석류가 예상 - 별도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 우려	사방댐 설치(1개소) (상장: 12 m, 하장: 8 m, 높이: 4 m)	300	
2	대일	가창면 대일리 산37	- 지속적인 유실로 임도 침하 진행중 - 임도가 경작을 위한 통로로 사용중에 있어 인명피해 위험 높음	- 계류보전(L=160 m) - 임도 재설치(L=360 m)	200	
3	우록	가창면 우록리 산169	집중호우시 산지유역에서 발생한 우수가 토석과 함께 유하하나 별도의 배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류측 주거지에 지속적인 피해	계류보전(L=80 m)	110	
4	정대	가창면 정대리 산48	상류측 유역의 규모는 비교적 작으나 산지우수가 토석과 함께 사면 직하부 주거지로 유입되어 정비사업이 필요	계류보전(L=120 m)	190	

◎ 가뭄재해 위험지구(1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도익	유가읍 도익리 999	- 상세 위험도지수 5.2으로 고위험 후보지 - 인명피해 발생 위험은 없으나 주민불편 및 재산 피해발생 가능성 보유	저수지(사배저수지) 준설 및 증고	2,200	

◎ 대설재해 위험지구(3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논공초교	논공읍 남리 328	- 중학교와 초등학교 진입로로 활용되는 경사로 위치 - 대설로 인한 결빙 시 보행자의 낙상, 차량 제동불능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 우려	도로용설장치 설치 (L=160 m)	150	
2	동곡초교	하빈면 동곡리 142	- 초등학교 진입로로 활용되는 경사로가 위치 - 대설로 인한 결빙 시 보행자의 낙상, 차량 제동불능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 우려	도로용설장치 설치 (L=30 m)	100	
3	세천초교	다사읍 세천리 1586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아파트단지 진입로로 활용되는 경사로가 위치 - 대설로 인한 결빙 시 보행자의 낙상, 차량 제동불능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위험 우려	도로용설장치 설치 (L=130 m)	140	

◎ 기타재해 위험지구(1개소)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반송지	옥포읍 반송리 산54-3	•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고 옥안상 제체 일부의 유실 우려 • 하류부에 카페 등 위락시설이 위치	•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 후 제체보강 (1식)	350	

II. 검토의견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우리군 관내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방재계획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추진현황 보고 및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주요내용은 달성군 전역에 대한 자연재해 현황을 조사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등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험 지구는 총7개의 재해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천재해 12개소, 내수재해 17개소, 사면재해 12개소, 토사재해 4개소, 가뭄재해 1개소, 대설재해 3개소, 기타재해 1개소로 총 50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 재해별 현황으로는 하천재해는 천내지구 등 12개소이며 미정비된 하천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748억원입니다.
 - 내수재해는 매곡지구 등 17개소이며 내수처리를 위한 펌프장 증설 및 신설, 관로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296억원입니다.

- 사면재해는 기세지구 등 12개소이며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5억원입니다.
- 토사재해는 본리지구 등 4개소이며 토사의 유실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8억원입니다.
- 가뭄재해는 도의지구 1개소이며 농업용수의 부족에 따른 저수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2억원입니다.
- 대설재해는 논공초교지구 등 3개소이며 급경사로 인한 대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억원입니다.
- 기타재해는 반송지지구 1개소이며 저수지 노후에 따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원이며, 위험지구 50개소 전체 사업비는 총 3,186억원입니다.

○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해예방 및 저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관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이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현장조사 등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여름철 집중호우의 강도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과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사면재해에 대한 검토, 가뭄 및 대설 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성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향후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시비 확보 등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